

## 종 법(宗法)

### 정화위원회법

**제1조** 종헌 제97조에 의해 본종의 종풍과 기강확립을 위하고 호종 및 안보적 차원에서 종도의 선행 분쟁 비위사항을 심의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위원회를 둔다. 단 정화위원장은 원로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종회의장 및 각원의 원장으로 구성하되 정화의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하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.

**제2조** 1. 정화위원회는 사찰의 풍기와 승려의 기강 규찰 포상 및 징계 종단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  
2. 본위원회의 중요 처리 사항은 종정 및 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
3. 징계에 관한 일체의 심의 사안은 감찰원장이 상정한다.  
4. 본위원회서 결의된 사항은 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**제3조**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